

용역관련 질의 답변서

구분	질의내용	질의요약	답변
1	<p>공고문 p.1, 4</p> <p>1)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일이 22.05.19까지 라고 나와있는데, 철수예정 확인서를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(22.05.18)까지 제출하라고 나와있음.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날짜가 22.05.19일이 맞는지?</p>	공고문 날짜오류	<p>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및 철수 예정확인서 제출마감기한은 22년 05월 20일입니다.</p> <p>공고번호 : 과천도시공사 공고 제2022-70호(22.05.04)로 재공고한 공고문을 참고 바랍니다.</p>
2	<p>공고문 (p.4) 6. 업무중첩도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책임, 분야별, 기술지원 기술인 평가 시 철수예정확인서 외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현황 확인서도 인정해주는지요. 그리고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타 용역에 중복되어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계약서와 배치표를 첨부하는 것도 인정하는지요.</p>	업무중첩도 관련	<p>1. 업무중복현황 확인서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발주청의 철수예정확인서로 확인할 예정입니다.</p> <p>2.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확인서 외 타 용역 계약서 및 배치표 등은 인정하지 않습니다.</p>
3	<p>입찰공고문 p.4, 6.의 가.</p> <p>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착수예정일은 22.08.01입니다. 그런데 배치표상 건축분야 분야별기술인의 투입시기는 약 6개월 뒤이므로, 건축분야 분야별기술인의 업무중첩 기준일자는 투입기준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?</p> <p>공고문</p> <p>P4. 6. 업무중첩도 평가에 관한 사항</p> <p>가. 기술인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해 착수예정일 : 2022.08.01.</p> <p>나. 타 용역에서 배치 중인~2022.07.31.까지 철수한다는 발주청의 철수예정확인서 첨부</p> <p>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</p> <p>P13. 9. 참여기술인 업무중첩도 관련</p> <p>다. ※ 다른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</p> <p>- 평가대상 건축 분야별참여기술인의 업무중첩 기준일은 투입계획표 상 2023.02.01.이 예정일로 되어 있는데 2023.01.31.까지 철수한다는 철수예정확인서를 첨부하면 되는건지요?</p> <p>Ⅲ.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9. 다항</p> <p>다. 시공 전 단계에 배치되는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(토목분야)이 다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에 상주기술인으로 중복 배치되어 있는 경우</p> <p>※ 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 제외(다른 용역의</p>	<p>건축분야 투입시기,</p> <p>건축분야 평가기준일</p>	<p>1. 배치표상 건축분야의 투입예정시기는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입니다.</p> <p>2.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13p의 Ⅲ.- 9. - 다항에 따라 '다른 용역의 참여기간이 해당 용역의 배치기간과 중복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'이므로, 건축분야 분야별 기술인의 업무중첩도 평가를 위한 기준일은 착수예정일로부터 6개월 뒤인 2023.02.01.입니다.</p> <p>단, 2023.01.31.까지 철수한다는 철수예정확인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.</p>

<p>발주청장으로부터 해당 영역의 평가기준일 이전에 확정된 배치계획 등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 또는 건설기술영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업무중복 현황 확인서에 따라 확인받은 경우에만 인정함)</p> <p>이라 명시 되어 있는데 배치계획상 상주 건축은 8개월 후에 투입이 되는데 중복도 기준일을 몇일로 작성해야 하는지 질의 드립니다.</p>		
<p>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.14, 31</p> <p>1) 기술지원 안전기술인을 평가할 때 건설안전기술사를 소지할 경우, 경력평가지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가 건축인 경력으로 산정해도 되는지?</p> <p>2) 경력증명서 상 안전관리분야로 특급이 나와야 하는지? 아니면 건축으로 특급이 나와도 되는지?</p>	<p>기술지원 안전기술인 관련(해당분야 평가) 해당분야 및 이외의 경력 기준</p>	<p>1.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해당분야 경력만 평가하며, 직무분야 경력평가는 대상이 아닙니다.</p>
<p>해당 공고상의 평가 기준에서 기술지원기술인 안전분야에 관한 평가에 관하여 현재 발주되고 있는 대부분의 건설사업관리영역에서는 안전분야에 대해 해당분야 및 직무분야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.</p> <p>이는 안전으로 해당분야를 평가(등급 및 경력)하는 최초 공고이며, 해당인원을 보유한 소수의 특정 업체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준으로 평가될 수 있어 평가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수 업체의 영역 참여를 제한하는 기준으로 사료 됩니다.</p> <p>현재 안전분야와 관련하여 발주되는 기준으로 조달청의 경우 건축분야 인력 중 1인을 안전관리자로 지정하여 평가(건축직무 평가)하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기술지원 안전분야는 자격만 평가(안전기사 소지 후 현장 4년 경력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소지자)하고 등급 및 경력 평가는 제외하고 있습니다.</p> <p>따라서 많은 회사가 참여하고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기술인 안전 평가자를 해당분야 평가에서 제외하고 안전관련 자격으로만 평가(안전기사 소지 후 현장 안전경력 4년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소지)하는 방식으로 완화하여 재공고 해주실 것을 의견 드립니다.</p>		<p>2.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경우 경력증명서 상 직무분야 및 등급과 제공된 업무분담 계획표, 배치표의 등급이 동일하여야 합니다. (평가하는 직무분야와 등급이 경력증명서 상에 기재되어 있어야 함)</p> <p>3. 본 공고의 기술지원기술인 안전분야는 ‘자격 및 해당분야 경력’을 평가할 예정입니다.</p> <p>4. 본 공사의 해당분야 경력평가 방법입니다. 해당분야 경력(100% 인정): 건축법시행령[별표1] 제20호 자동차관련시설 가목 주차장공사 이외의 경력(60%인정):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공사 중 주차장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 ▶ 건설공사 업무 인정범위(16p): [별표3] 제4호나목 =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1</p>
<p>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p.15 다.</p> <p>- 평가 대상 기술인 중 기술지원 (안전분야) 기술인의 등급, 해당 및 직무 분야 평가 시 직무 분야를 안전으로 평가하는지, 건축으로 평가하는지?</p>		
<p>세부평가기준 p.15, p16, 다. 해당분야 경력평가</p> <p>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지 경력확인서상 직무분야가 건축으로 표기되어 있으면 인정 가능한지요?</p>		
<p>세부평가기준 16p. 다. 의 2)항목. 해당분야 경력평가 및 안전기술인 경력</p> <p>- 해당분야(주차장)이외 60% 인정경력은 건축공사인지? 아니면 건설공사(직무경력)로 모두 인정인지? ex)토목기술인 - 도로공사 등)</p> <p>- 기술지원 안전기술인의 경력평가 시, 직무분야-건축, 담당업무-안전관리 인 경력도 인정되는지? (아래 예시)</p>		<p>5. 기술지원기술인의 경우 [서식10]의 직무분야 실적은 평가대상이 아니므로 작성하지 않습니다.</p>

1998.04.01 부천원미동용립아파트신축공사	공동주택	안전관리	안전관리
1999.03.31 원미아파트재건축조합 (395일) (395일)		건설안전	대리
1999.04.01 안산고산APT신축공사	공동주택	*안전관리자	
2000.12.13 원흥산업(주) (623일) (623일)		건축	안전관리

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
P15. 3. 참여기술인 평가 관련 다. 해당분야 경력평가
- 안전분야 기술지원기술인의 해당분야 경력평가 또한 100% 주차장공사 60% 기타 건축공사로 경력평가 하는지요?

세부평가기준 34p. 서식 7-1 증빙서류
- 안전기술인은 미평가 대상이므로, 안전관리자 교육훈련 수료증(16시간)만 첨부하면 되는지? 별도 추가서류가 있는지?

세부평가기준 p.14, 3.의 가. 의 2)
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는 비평가이므로 PQ서류에 안전관련 교육수료증은 첨부하지 않아도 되는지요?

세부평가기준 p.34 [서식7-1]
분야별기술인 중 안전관리자는 비평가대상이므로 해당 양식은 미제출해도 되는지요?

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
P14. 3. 참여기술인 평가 관련
가. 2.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할 자
[안전분야 기술인으로 함]
- 안전 분야별참여기술인은 비평가로 안전교육 이수여부를 사업수행능력 평가 상 확인이 불가한데 낙찰 후 적합한 인원을 배치하면 되는건지요?
- 만약 위의 내용대로 평가한다면 서식 7-1의 참여기술인 안전관리자 현황은 추후배치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지요?
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
14P. 3. 가. 2) - 시공단계 참여기술인 중 안전관리담당자로 지정할 자는 안전분야 비평가기술인입니다.
1.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시 미작성 및 평가기술인 중 지정하지 않으며, 낙찰이후 자격요건충족인자로(안전경력 2년이상, 건설안전기사, 산업안전기사 이상 보유자)제출 및 배치승인 받아 배치하는 것이 맞는지요?

안전관리자 증빙서류
관련

1. 분야별 기술자 중 안전분야의 경우 비평가이므로, 안전교육이수여부는 추후 제출받을 예정입니다.

2. [서식7]이후의 참여기술인 관련 양식의 경우 비평가 기술인은 추후배치로 작성하나, 등급은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.

3. 비평가 참여기술인 관련 서류제출은 추후 제출받을 예정이며, 비평가 대상 기술인의 서류 제출 시 중복배치 기준을 벗어나는 등 과업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2~13p 일반사항에 따라 실격 등으로 처리합니다.

5

	2.그렇다면 34p.[서식7-1]은 배치승인을 받을시 작성 제출하면 되는 것이 맞는지요?		
6	사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타 용역 낙찰시 교체가능여부? - 이번 용역에 참여하는 평가대상 기술인이 타 PQ에 낙찰이 되었을 경우 교체가 가능한지요?	중복배치(교체) 관련	평가대상 기술인의 경우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 12p 일반사항-7.-가.항에 따릅니다.
7	세부평가기준 18p. 용역수행성과 관련 - 참여업체 중 1개 업체라도 해당 성과실적이 있을 시, 나머지 실적없는 업체는 최하등급("가" /1.2점)인지?	용역수행성과 관련	기준에 따라 차등 평가할 예정이며, 다수의 업체가 접수하여 하나라도 실적이 있을 경우, 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하등급을 적용합니다.
8	세부평가기준 24p. 다. 의 1)항목 제출부수 관련 - 일체자료 전자파일 제출 시, 동일한 파일로 USB 3개를 제출하는게 맞는지?	USB 제출부수 관련	맞습니다.
9	세부평가기준 p.33 [서식7] 평가기술인만 작성하면 되는지요?	평가서 작성 ([서식7]기술인 현황)	평가 기술인만 작성하며, 5번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10	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(p.36) 서식9 해당 분야 실제 경력 기재라 함은 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참여일로 판단하면 되는지요.	평가서 작성 ([서식9]경력기재)	해당분야 실제 경력기재는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 상 참여일로 합니다.
11	세부평가기준 p.37, p.38, p.39 [서식9-1], [서식10] 경력확인서에는 참여기간만 표기 되어있고, 오래된 경력들의 과업기간을 경력마다 찾기에는 상당한 제한이 있으므로 생략 가능한지 요청드립니다.	평가서 작성 (과업기간 작성여부)	과업기간과 참여기간의 경우 평가 시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.
12	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p60 자기소개서 표지 1) 표지양식에서 <별지 1> 문구 삭제가능 여부	평가서 작성 (자기소개서 작성)	1. 표지 양식의 <서식00>, <별지0> 등은 문서의 구분을 위해 유지하시기 바랍니다. 2. 자격증 문구는 삭제 가능합니다. 자기소개서는 61p, 63p의 제시한대로 작성합니다.(2페이지이내, 자유롭게)
	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p61 자기소개서 본문 1) [※ 자격증 ~] 문구 삭제 가능 여부? 2) 자기소개 작성기준 - 줄간격, 자간, 장평 자유 조정 가능 여부 - 이미지, 표 삽입 가능 여부 - 흰색글씨, 볼드체(굵은글씨), 기울기, 밑줄 사용가능 여부 3) 별도의 쪽번호 표기기준이 있나요?		
	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p61 제본 방식 1) 제본순서 [표지 - 책임 자소서 - 분야별 자소서]순으로 되어 있는데 양식에 분야별 자소서 표지가 별도로 첨부되어 있음		

** 책임표지 - 책임자소서 - 분야별 표지 - 분야별 자소서 순으로 하면 되나요?
 2) 중간에 분야별 표지도 삽입된다면 제본용지를 백상아트지 180g/m²로 해야 하는지 본문과 같은 백상지 80g/m²로 해야 하는지요?

세부평가기준 p.60~p.63 자기소개서 작성 관련
 ① 쪽번호 표기 여부와 쪽번호 표기시 작성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?
 ② <별지1>과 <별지2> 사본작성시 업체명/대표자/주소/전화번호/FAX/건설사업관리기술인 성명은 삭제하는 것인지요? 아니면 OO 처리하여 작성하는 것인지요?

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
 P60. 자기소개서 작성관련 ※ 원본외 각 사본에는 업체명/대표자/ 주소/전화번호/FAX/기술자 성명등을 표기하지않음(OO처리)
 - 표지에 있는 인적사항은 삭제하여 제출해도 되는지요?

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
 60P. - <별지 1>, <별지 2>표지 양식이 2개입니다. 안내된 제본순서는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/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자기소개서순입니다.

1.책임과 분야별 자소서는 합본하여 하나로 제본하는 것이 맞다면, <별지2>의 표지를 내지 백상지80g/m²로 제본하여야 하는지요?

2.아니면 책임과 분야별 자소서 각각 제본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?

※ 제본순서

<별지 1> 표지	백상아트지 180g/m ²
책임자소서 2장	백상지80g/m ²
<별지 2> 표지	백상아트지 180g/m ² or 백상지80g/m ²
분야별 자소서 2장	백상지80g/m ²

※ 제본순서

1	<별지 1> 표지	백상아트지 180g/m ²
2	책임자소서 2장	백상지80g/m ²
3	<별지 2> 표지	백상아트지 180g/m ²
4	분야별 자소서 2장	백상지80g/m ²

4. 자기소개서 사본의 인적사항은 OO처리합니다.(표지의 인적사항 포함)

13

책임 및 토목기술인 면접/평가
 - 면접 평가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활용하여 발표하는지?
 - 만약 발표한다면 발표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?
 (ex. 책임 기술인 2분 발표/질의응답 3분, 토목 기술인 2분 발표/질의응답 3분)
 - 발표시 제출한 자기소개서 지참이 가능한지?

면접관련

1. 면접 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활용할 예정이며, 발표시간과 질의응답시간은 면접관련 개별안내 시 같이 안내드릴 예정입니다.

2. 면접발표 시에는 자기소개서를 지참할 수 없습니다.